

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 (수시공시)

※ 공시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

(제5-7호)

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

1. 대주주명	신안건설산업(주)[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]	
2. 신용공여 내용	신용·공여일	2020.12.28
	신용·공여종류	대출
	신용·공여금액	2,500백만원
	신용·공여총잔액	5,500백만원
	만기일	2021.09.21
	신용·공여금리(%)	5.5%
3. 자금용도	운영자금	
4. 이사회결의일	2020.12.24	
5. 기타	부동산 담보	

[작성요령]

- 주1) 대주주와의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시 기재
- 주2) “대주주명”에는 최대주주, 주요주주,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 신용공여를 한 개별 개인 또는 법인명을 기재(법인명은 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상호로 기재)
- 주3) “신용공여종류”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각호에 따른 신용공여 범위의 분류에 따름
(예: 대출, 지급보증, 리스물건취득 및 제반비용 할부금융이용액 등)
- 주4) “신용공여 총잔액”은 해당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한 총잔액을 말함
- 주5) “기타”에는 담보의 종류, 평가액, 주요특별약정내용 등을 기재